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6528 세무조사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강○○, 채○○, 나○○
피 고	○○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최○○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6.경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내역'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6

이 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17. 7. 20. 피고로부터 ○○ ○○구 C 외 2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17. 8. 3.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합계 624,200,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B는 2017. 8. 7.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에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한 과세표준 653,247,305,021원에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23,267,943,7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B는 2017. 8. 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였고, D은 2017. 9. 19.경부터 주택건설공사를 개시하였다. B는 2018. 4. 3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2.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같은 날 E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였다. E은 2019. 11. 13.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3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피고에게 과세표준 622,770,739,068원에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19,193,794,1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특별시장은 2022. 11. 14.부터 2022. 11. 25.까지 B 및 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 341세대 중 164세대(이하 '이 사건 세대'라 한다)는 공부상 공용면적인 지정주차장, 지정창고, 엘리베이터홀(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사실상 세대 단독으로 사용하므로, 이 사건 시설의 면적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6

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고급주택 판단 기준이 되는 연면적에 포함되고, 이에 이 사건 세대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시장은 2022. 12. 28.경 B에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세대 비율의 토지 과세표준 284,366,108,488원에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이 정하는 고급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40,523,741,900원을 추징할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23. 3. 6. 이 사건 세대 중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21. 5. 25. 취득한 원고에게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79조를 근거로 들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 및 매매, 증여 등 승계취득자에 대해 고급주택 여부 판단을 위한 부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별지 1 처분 내역 기재 내용과 같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는 창고, 주차장, 엘리베이터홀 등 공부상 공용면적의 실제 사용 현황을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단순한 협조 요청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 결정이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통지와 같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실시할 계획도 없으므로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6

사건 세무조사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6

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9조는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 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은 '법 제8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23. 3. 6. 이 사건 주택을 승계취득한 원고에게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79조를 근거로 들어 '이 사건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 판단을 위한 부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 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보냈다. 또한 피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조사사유 등과 함께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함을 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23. 3. 6.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처분을 위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6

1) 관련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2, 3, 7, 8, 13, 14, 16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23. 3. 6.경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세대를 취득한 사람들을 상대로 취득세 적정신고 여부 조사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홈서비스센터장(이하 '이 사건 센터장'이라 한다)은 2023. 3. 14. 피고에게 조사일정을 연기·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3. 3. 20. 이 사건 센터장에게 '2023. 3. 31. 20시로 예정되어 있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기일까지 개별 세대에 대한 조사일정을 유보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4. 11. 이 사건 센터장에게 'B가 이 사건 세대에 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특별시장이 2023. 4. 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건축주의 원시취득에 있어 고급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이상, 승계취득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현황 확인은 당연한 필요가 있으므로 2023. 4. 17. 18:00까지 공동 세무조사 개시일(4. 21. 이전)을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특정이 안 될 경우 개별납세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세무조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6

를 진행할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5. 9. 다시 원고에게 '조사일정을 2023. 5. 18.부터 2023. 5. 31.까지로 하여, 창고, 주차장, 엘리베이터홀 등 공부상 공용면적의 구조·사용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겠고, 여러 사유로 실지조사가 어려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별시에서 전달받은 B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자료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과세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특별시 ○○구의 세무공무원들은 2023. 5. 22. 16:00경 이 사건 공동주택에 방문하여 공용부분을 조사한 다음 일부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대 164세대 및 각 승계취득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23. 7. 27.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우리 구가 보유한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자료, ○○특별시장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과세자료와 현장조사 내역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는 현장조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3. 9. 6.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 중과추징을 과세사유로 하여 합계 682,637,280원의 지방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23. 12. 20. 원고에게 가산세 154,637,280원을 제외한 지방세 528,000,000원을 부과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6

소는 부적법하다.

가) 이 사건 세무조사 결정은 조사대상 기간을 2023. 3. 27.부터 2023. 4. 7.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기간 이 사건 주택의 현황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다. 피고는 2023. 5. 9. 다시 원고에게 조사일정을 2023. 5. 18.부터 2023. 5. 31.까지로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간에도 이 사건 주택의 현황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다.

나) 원고는 ○○특별시 ○○구의 세무공무원들이 2023. 5. 22. 이 사건 공동주택에 방문하여 공용부분을 조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세무공무원들은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2023. 5. 22. 일회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홀, 지하창고, 주차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상태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지방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만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의 행사나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고, 2023.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지방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동일한 세무조사를 재개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6

재판장 판사 김○○

판사 문○○

판사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6

별지 1

처분 내역

조사대상 세목	부동산 취득세
조사대상 기간	2023. 3. 27. ~ 2023. 4. 7.
조사기간	담당자와 현장 방문일정 협의
조사사유	취득세 적정신고 여부 조사(지방세법에 따른 고급주택 여부)

- 현재 세무조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6

별지 2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6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6

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지방세기본법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등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6

자

4.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